

1995. 12.

光州廣域市西區住民所得支援與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案

審 查 報 告

總 務 社 會 委 員 會

光州廣域市西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年 12月
總務社會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1995年 12月 18日
- 나. 提出者 :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 다. 回附日字 : 1995年 12月 18日
- 라. 上程日字 : 1995年 12月 22日
-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回 (95年 12月 22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總務課長 尹 大 宇)

가. 提案 事由

- 內무부 개선지침에 따라 『새마을소득자금』 『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을 통폐합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 용자기금설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 영세민생활안정자금
-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5조)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용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후 구청장이 확정

○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 선정(안 제6조)

- 생계가 곤란한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학자금용자

○ 기금 용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

- 구성요건 : 위원장 포함 5 ~ 7인
(위원장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3인포함)

○ 용자한도 및 이율등(안 제8조)

- 가구당 용자한도액 : 1,000만원이하
- 대부기간 : 2년거치 2년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5%

○ 이자 및 연체이자 (안 제13조)

- 용자금이자 : 원금상환시 징수
- 연체이자 :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

- 기금운용 공무원 지정(안 제16조)
 -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 분임기금운용관 : 사회과장
 - 기금출납원 : 사회계장

- 상환기한전 용자금 반환(안 제22조)
 -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때
 - 자금을 용자목적외 사용하거나 구 관할 구역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본 조례안은 내무부 개선지침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폐합 사회과에서 운영하며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가구당 용자한도액 상향조정과
- 기금용자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하며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부기간을 조정 및 이자를 신설했으며
- 기금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토록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論 要旨 : 생 략

6. 審査 結果 : 수정안 의결

7. 少數 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용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설치)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3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

제 4 조(기금의 적립) ①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 및 제3조의 기금을 필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 2 장 기 금 의 운 용

제 5 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용자대상)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다른업종으로 전환코자 하는 가구
5.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6.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7.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8.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제7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인 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 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 설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용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용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제 9 조(용자금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 제 10 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 제 11 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 한다.
- 제 12 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3 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 14 조(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계

- 제 15 조(세입세출) ①기금의 세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세출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 제 16 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17 조(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징수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18 조(결산등) ①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 20 조(감독) ①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 31) 자금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

제 22 조(용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 23 조(용자금 반환통보) 제22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용자된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 세입조치 한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용자금 대부신청) 제2항중 “서구 관내에”를 “광주광역시에”로 “2인 이상
의”를 “1인 이상의”로 하고 “세우게 할 수 있다”를 “세워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정의) ②제1항의 대부신청에서는 <u>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u> <u>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이 하</p>	<p>제9조(정의) ②----- <u>광주광역시에 ----- 1인 이상</u> <u>의 ----- 세워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여 백</p>